

서식1

신청서 (신용·체크카드 충전_온·오프라인)

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 (신용·체크카드 충전금)

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청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| 전화번호 |
| | 주소 | | 전자우편 |

|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(필수사항) | 확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활용 목적

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·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**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.

활용할 개인정보
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**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, 외국인등록정보,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**하거나 **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**합니다. []

개인정보 보유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

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안내

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·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** 등을 위하여 **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**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[]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

2.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

위탁받는 자:

신한카드, KB국민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비씨카드, 하나카드, 우리카드, 현대카드, NH농협카드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 기업은행, SC제일은행, IM뱅크, 수협은행, 새마을금고, 우체국 예금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제주은행, 전국저축은행, 농협, 축협, 신협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낸셜, BC비로카드, KG파이낸셜

위탁 목적: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정산

위탁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, 주소, 연락처

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
| 유의사항 (필수사항) | 확인 |
|--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|----|
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피해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[]

2.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3.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,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 | 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서식2

신청서 (모바일·카드형 상품권_온라인)

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 (모바일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)

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청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| 전화번호 |
| | 주소 | | 전자우편 |

|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(필수사항) | 확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활용 목적

동 신청서를 접수한 사·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**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.

활용할 개인정보
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**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, 외국인정보, 국민건강보험**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**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**을 통해 조회합니다. []

개인정보 보유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
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

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안내

동 신청서를 접수한 사·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** 등을 위하여 **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**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[]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

2.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

위탁받는 자: 한국건강관리협회, 코-아이, 비즈플레이, KIS정보통신, 니아스정보통신, 부산은행, IM뱅크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한국조폐공사 []

위탁 목적: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정산

위탁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, 주소, 연락처

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

| 유의사항 (필수사항) | 확인 |
|--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|----|
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피해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[]

2.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3.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,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 비 서 류 | 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서식5

처분사전통지서 [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|
| 예정된 처분의 제목 | | | | | | | |
| 당사자 | 성명(명칭) | | | | | | |
| | 주소 | | | | | | |
|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 | | | | | | |
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| | | | | | | |
|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| | | | | | | |
| 의견제출 | 제출처 | 기관명 | | | 부서명 | | |
| | | 주소 | | | 담당자 | | |
| | | 전자우편주소 | | | 전화번호 | | |
| | 제출기한 | | | 팩스번호 | | | |
| | | | | 년 | 월 | 일까지 | |

<의견제출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·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끝.

발신명의

작인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|
| 기안자 | 직위(직급) | 서명 | 검토자 | 직위(직급) | 서명 | 결재권자 | 직위(직급) | 서명 |
| 협조자 | | | 접수 | | | | | |
| 시행 |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| | | |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 | | | |
| 우 | 주소 | | | | / 홈페이지 주소 | | | |
| 전화번호() | 팩스번호() | | | |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| | / 공개구분 | |
|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 | | | | | | | | |

서식6**의견제출서 [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]**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견제출인 | 성명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
| 의견제출 내용 |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| |
| | 당사자 | 성명(명칭) |
| | | 주소 (전화번호:) |
| | 의견 | |
| 기타 | | |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서식7

환수통지서

고유가 피해지원금 환수(반환명령) 통지서 (○차)

| | | | | |
|--|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| 성 명 | | 전화번호 | |
| | 생 년 월 일 | | | |
| | 주 소 | | | |
| 지원내용 | | | | |
| 환수(반환) 사 유 | | | | |
| 환수결정액 | | 원 | 납부장소 | |
| 기 납부액 | | 원 | | |
| 납부액 | | 원 | | |
| 납부기한 | 년 월 일까지 | 산출내역 | 별첨 | |
| <p>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,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2px 10px;">직인</div> | | | | |

서식8

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

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

| | 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| 전화번호 |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 (공무원 기재) 원 | |
| | 주소 | | 전자우편 | (신청인 확인) | (서명 또는 인) |

| 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대리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| 신청인과의 관계 | 휴대전화 (유선) |
| | 주소 | | | 전자우편 |

1. 지원금 잔액은 신청서를 접수할 당장 공무원이 조회하여 기재하고,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합니다. 단,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잔액을 복사 오해하기 어려운 경우, 신청인은 추후 별도 확인 후 서명합니다.

신청사유 카드 사용 불능 [] (사유: 예시: 신용불량, 유효기간 만료 등)

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) []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) []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) [] 선불카드 []

1. 지급방법은 그 최소 권중에 따라 선택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,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(예시 : 잔액이 333,580원이고 상품권·선불카드의 최소 권중이 1만원인 경우, 330,000원은 상품권·선불카드로 3,580원은 현금으로 지급)

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

1.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곤란한 경우,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 명의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|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(필수사항) | 확 인 |
|---|-----|
| <p>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사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보유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안내 본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.</p> | [] |
| <p>2.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받는 자: 우리은행, 신한은행 농협 등(지자체별 지역금고 은행 표기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 목적: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정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연계정보, 주소, 연락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.</p> | [] |

| 유의사항 (필수사항) | 확 인 |
|---|-----|
| <p>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피해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 <p>3.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,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총잔액은 소멸됩니다.</p> | [] |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 전환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리신청인) ^{년 월 일} 서명 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| |
|------|---|
| 구비서류 | 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신청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신청서) 3. 기타 전환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|
|------|---|